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

발의연월일: 2024. 5. 31.

발 의 자:김승수·이종배·박충권

김기현 · 김성원 · 윤상현

박성민 · 이인선 · 김석기

구자근・강대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법원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보훈보상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또한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

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 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 등).

법률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수준을"을 "본인과 그 동거가족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및 자녀를 말한다. 이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같다)의 생활수준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지급액은 본인과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생활조정수당 지급 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생활조정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제15조제1항 및 제4항과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는"을 "동거가족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부양의무자에"를 "동거가족에"로, "부양의무자의"를

"동거가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동거가족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동거가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양의무자의"를 "동거가족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3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제13조(생활조정수당) ①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 본인과 그 동거가족(「주민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록법 :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및 자녀를 말한다. 이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같 다)의 생활수준을-----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3)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지급액은 본인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생활조 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수당 지급 결정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과 생활조정수당을 합 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신 설>

-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7 ① (생 략)
 -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 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제15조제1항 및 제4항과 제16 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 출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③ ④ (생 략)

| |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
| | ④ 생활조정수당의 구체적인 |
| |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 |
| | 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 | 으로 정한다. |
| 줴 | 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 | ① (현행과 같음) |
| | (2) |
| | |
| | 도고기주 O |
| | <u>동거가족은</u> |
| | |
| | |
| | <u>.</u> |
| | |
| | |
| | |
| | |
| | 1 ~ 2 (청채고, 가오) |
| | 1. ~ 3. (현행과 같음) |
| า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제 | 15조(조사·질문 등) ① |
| | |
| | |
| | |
| | |
| | |
| | |

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지급 신청을 강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 저 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

| <u>동거</u> |
|-------------------|
| <u>가족에</u> |
| |
| |
| |
| |
| <u>동거가</u> |
| <u> </u>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4 |
| |
| <u>동거가족이</u> |
| |
| |
| |
|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
| 네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 |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_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 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 양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 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 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 25조에 따른 신 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 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 수당수급자와 그 <u>부양의무자의</u>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

| <u>동거</u> |
|--------------|
| <u>가족이</u> |
| |
| |
| |
| |
| |
| |
| |
| |
| |
| |
| |
| <u>.</u> |
| ② |
| <u>동거가족의</u> |
| |
| |
| |
| |
| |
| |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 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 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 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 ○ ~ ① (연행과 실금) |